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2017 년 3 월 27 일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 조 (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) 제 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1. 선임사외이사: 사외이사 심 재 우 (임기: 2017 년 3 월 27 일 ~ 2018 년 회사정기주주총회일)
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: 회사의 주주간 협약 제 6.2.4.조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가 추천한 비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
3. 선임일: 2017 년 3 월 27 일 (2017 년제 2 차 이사회)